
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예고 실시(22.7.7. ~ 8.16.)

주요 내용

- ① 투자성 상품에 대한 불초청권유는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, 이 경우에도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위험 상품*의 권유금지가 확대됩니다.
 - * 고난도상품(증권·공모펀드·일임·신탁 등), 사모펀드, 장내·장외파생 등
- ② "동일기능 동일규제" 관점에서 선불·직불지급수단(전자지급수단 포함)도 금소법 상 연계·제휴서비스 관련 규제*가 적용됩니다.
 - * 연계서비스에 대한 설명의무, 연계서비스 축소·변경 시 6개월 전 고지 등
- ③ 환율 변동 등에 따라 **손실가능성**이 있는 **외화보험**(보험료 납입 / 보험금 지급이 외화로 이루어지는 보험) 가입 시에도 **적합성·적정성 원칙이 적용**됩니다.
- ④ 그 밖에 [●]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전문금융소비자 취급의사 확인대상을 합리화하고, ^②금융소비자의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전자적 방식을 확대 하는 등 업계에서 요청한 규제개선도 추진합니다.
 - * ① 자본시장법령과 동일 규제이나 금소법령의 경우 의사확인이 필요한 전문소비자 범위가 넓음(금융지주·펀드·수은 등 추가) → 확인 범위를 자본시장법령과 통일
 - ② 전자서명 外 안전성·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식 허용

1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

① **불초청권유 금지범위 재검토**(令 §16① i 개정)

- (현황) 금소법은 원칙적으로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·전화 등을 활용한 투자성 상품의 권유를 금지("불초청권유 금지")하고 있습니다.
 - 그러나 시행령에서 넓은 예외를 인정함에 따라, 장외파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성 상품에 대한 불초청권유가 가능한 상황입니다.
- □ (개선) 개정 방판법* 시행('22.12.8일) 등에 따라 투자성 상품에 대한 과도한 불초청 방문판매 등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,
 - * [기존 방판법] 14일의 청약철회권을 적용하여 투자성 상품의 방문판매가 제한 → [개정 방판법] 방판법 적용대상에서 금융상품 제외
 - 소비자의 구체적·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불초청권유의 경우, [●]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되, 이 경우에도 [●]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위험 상품*의 권유금지가 확대됩니다.
 - * (현행) <u>장외파생</u>만 금지 → (개정) <u>고난도상품</u>, <u>사모편드</u>, <u>장내·장외파생</u> 금지 단, 전문금융소비자의 경우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만 금지(현행과 동일)

② 지급수단에 대한 연계서비스 규제 적용 (숙 § 3①iv 신설 등)

- (현황) 선불·직불지급수단(전자지급수단 포함)은 신용카드와 달리 금소법 상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"연계서비스 규제*" 가 적용되지 않습니다.
 - * 연계서비스에 대한 설명의무, 연계서비스 축소 · 변경 시 6개월 전 고지 등
 - 이에 연계서비스를 소비자한테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변경·축소하여도 아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등 소비자보호 공백이 있으며, "동일기능-동일규제" 관점에서도 신용카드 등과 규제차익이 존재합니다.
- □ (개선) 선불·직불카드 등에도 연계서비스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금융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 하겠습니다.
 - ※ 체크카드 등 지급수단에도 금소법 상 **연계서비스 규제를 적용**하기 위한 **후속** 조치로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」도 동시 개정 추진

- ③ **외화보험에 대한 적합성 · 적정성 원칙 적용** (숙 § 11① i 다목 신설)
 - **(현황)** 외화보험의 경우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손실가능성이 있음*에도 불구하고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**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 - * 현재 투자성이 있는 변액보험은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 旣적용 중
 - ** (적합성 원칙) 소비자 성향 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금융상품 권유 금지 (적정성 원칙)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상품이 소비자에게 부적정할 경우 고지·확인
 - □ (개선) 외화보험에도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.
 - ※「외화보험 종합개선방안('21.12월)」 후속조치
 - √ (관련 내용) 외화보험은 투자적 성격이 있으므로 '동일상품 동일규제' 원칙에 따라 변액보험 등 투자성 상품에 준하는 규제 적용 필요
 - ⇒ 외화보험도 **손실가능성이 있는 보험상품**에 해당하므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**적합성·적정성 원칙을 적용**

④ 기타 제도개선 및 합리화 필요사항

- (1) 장외파생상품 전문금융소비자 취급의사 확인대상 합리화 (令 § 2⑩iii)
 - (현황) 일부 전문금융소비자의 경우 "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전문금융 소비자로 대우받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알린 경우"에만 전문금융 소비자로 취급됩니다.
 - 다만, 금소법 상 "확인대상 전문금융소비자" **범위**가 **동일한 규제**를 운영 중인 **자본시장법령 대비 넓어*** **부담이 된다는 지적**이 있습니다.
 - * 자본법령 대비 "금융지주사, 수은, 금감원, 신보, 거래소, 금융협회 등"추가
- □ (개선) "전문금융소비자 취급의사 확인대상" 범위를 자본시장법령과 통일 하여 규제정합성을 제고하고 규제부담도 완화하겠습니다.
- (2) 내부통제기준 제·개정 시 외국금융회사 특례 신설 (令 § 10③)
- (현황) 금소법 상 내부통제기준을 제·개정하려는 경우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나,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은 이사회가 없는 경우*가 존재합니다.
 - *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의 경우 이사회 설치의무가 면제(지배구조법 § 3②)
- □ (개선) 이사회가 없는 외국금융회사의 지점은 대표자가 참여하는 내부 의사결정기구 승인으로 내부통제기준 제·개정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.

(3) 금융소비자의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전자적 방식 확대 (令 § 11의2 신설)

- (현황) 적합성·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의 이행을 위해서는 금융소비자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
 - 「전자서명법」상 전자서명을 제외한 전자적 방식(휴대폰 인증, PIN 인증, 신용카드 인증 등)은 사용이 불가한 상황입니다.

(4) 대출성 상품에 대한 제3자 연대보증 금지 명확화 (☆ § 15②)

- **(현황)** 현행 법령 문구 상 '대출성 상품'이 아니라 '대출'에 대해서만 제3자 연대보증이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.
- □ (개선) 제3자 연대보증 금지대상을 '대출성 상품'으로 명확히 하겠습니다.

(5) 불공정영업행위 중 구속성 판매의 유형 명확화 (↑ § 15④ i)

- **(현황)** 대출성 상품과 관련한 **구속성 판매**(이른바 '꺾기')**의 유형**이 시행령에 **열거**되어 있으나.
 - "금융회사가 **자신이 판매**하는 **다른 금융상품**의 계약 체결을 소비자에 **강요**하는 행위"가 **명시되지 않아** 해석상 **불명확**한 부분이 있습니다.
- □ (개선) 자신이 판매하는 다른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도 구속성 판매 유형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겠습니다.

(6) 증표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 있는 기관 추가 (令 § 24② i)

- (현황) 금융상품판매대리·중개업자의 경우 「금소법」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증표를 고지할 의무가 있으나,
 - 등록의무가 없는 대리·중개업자의 경우(예: 신용카드 제휴모집인)에는 증표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 있는 기관이 없는 상황*입니다.
 - * 등록이 필요한 대리·중개업자의 경우 해당 등록기관(금감원·협회 등)에서 증표 발행
- □ (개선) 법상 등록 의무가 없는 금융상품판매대리·중개업자의 경우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증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- (7) 장기 금융상품에 대한 자료보관 의무 합리화 (숙 § 26② i)
- o (현황) 금소법은 통상 10년의 자료보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.
 - 거래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금융상품(예: 20년만기 주담대 등)의 자료 보관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*이 없습니다.
 - * 단, 보장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보장성 상품은 보장기간 동안 자료를 보관하도록 규정
- □ (개선) 거래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금융상품의 경우 해당 거래기간 동안 "계약체결·이행관련 자료"를 보관하도록 명확히 하겠습니다.
- (8) 고난도투자일임·금전신탁 청약철회권 기산일 명확화 (令 §37①ii 나목, 라목)
- (현황) 자본시장법 상 숙려기간 규정이 상이하여 금투상품과 투자일임 계약 등의 청약철회기간* 해석에 혼선의 여지가 있습니다.
 - * 금소법에 따라 고난도금투상품 등의 경우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

※ 청약철회기간 관련

- √ (금투상품) 숙려기간(2일, 청약철회가 가능한 기간) 후 계약 체결 → 9일간 청약 철회 가능 : 자본시장법 상 숙려기간 2일 + 금소법 상 청약철회 기간 7일
- √ (투자일임 등) 청약 없이 계약 체결(숙려기간 2일은 계약해지가 가능한 기간) → 7일간 청약철회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 : 자본시장법 상 숙려기간과 금소법 상 청약철회기간이 동시 진행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
- □ (개선) 고난도투자일임계약 및 고난도금전신탁계약의 청약철회권 기산일을 자본시장법 상 '숙려기간이 경과한 날'로 명확히(9일간 가능) 하겠습니다.

2 향후계획

□ 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**법제처 심사** 등을 거쳐 **'22년 하반기** 중 **시행**할 예정입니다.

〈 입법예고 관련 안내사항 >

- 입법예고는 41일간(7.7.~8.16.)이며,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 -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시 이유 명시)
 -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·전화번호
 - 일반우편 :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
 - 전자우편 : dufquf@korea.kr 팩스 : 02-2100-2999
- ※ 개정안 전문(全文)은 "금융위 홈페이지(www.fsc.go.kr) › 정보마당 › 법령정보 › 입법예고"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담당 부서	금융소비자국	책임자	과 장 권유이(02-2100-2630)
<총괄>	금융소비자정책과	담당자	사무관 이지형(02-2100-2637)
<공동>	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	책임자	국 장 조성민(02-3145-5700)
		담당자	팀 장 정재승(02-3145-5697)



